5.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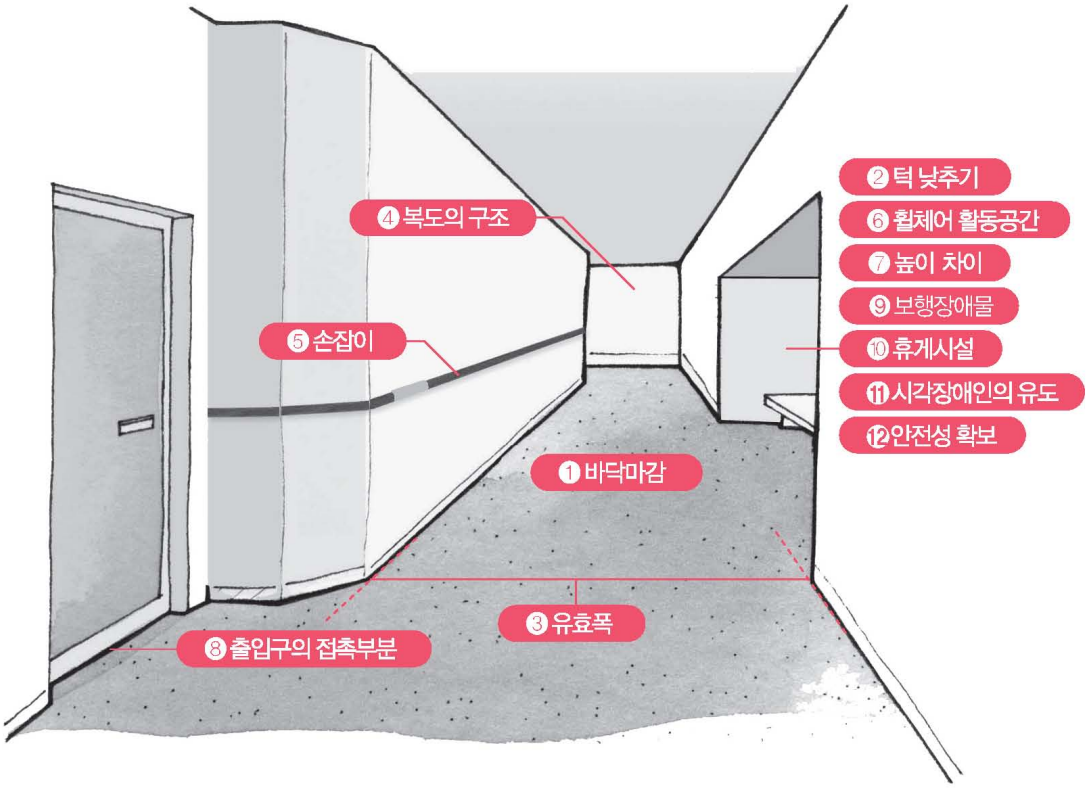

■설치원칙

복도는 각 실을 연결하는 연결통로이므로 통행과 각 실로의 이동 및 접근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한 폭과 회전 및 교행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.

■설치요점

- 최단거리로 각 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복도를 짧게 한다.
- 복도를 복잡하게 연결하거나 원형 또는 방향전환이 반복되는 구조일 경우, 시각장애인, 노인, 어린이 등의 이용이 어려워진다.
- 휠체어 사용자와 교행할 정도의 폭이 확보되지 못하면 모두의 통행이 불가능해진다.
- 복도는 대부분 어두우므로 턱이나 단차가 있으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통행에 어려움이 크다.
- 바닥마감재는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양탄자의 경우 지나치게 털이 길지 않아야 한다.
-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인지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하고 통로 안쪽으로 돌출물이나 기타 보행장애물이 없어야 한다.

1) 바닥마감

- 단차가 2cm를 초과하게 되면 임산부, 어린이, 노인, 보행 장애인 등이 걸려 넘어질 우려가 크다.
- 바닥마감은 목발 등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여야 하며, 양탄자 등은 털이 길어 휠체어의 이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.
- 바닥마감재료의 질감, 색상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유도, 경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계단 시작과 끝지점 · 장애인용 승강기 조작기 · 화장실 표지판의 0.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.

〈복도의 바닥마감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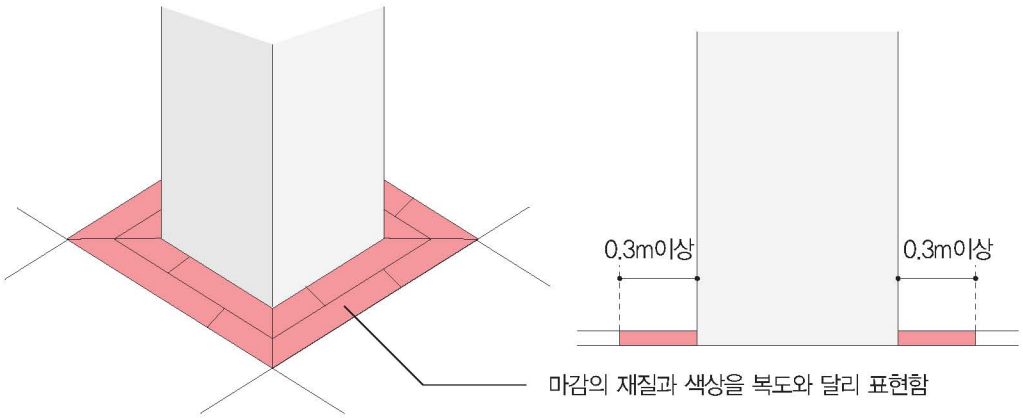

〈기둥 주변 바닥마감〉

2) 턱 낮추기

- 턱이나 바닥면의 단차가 없어야 한다.
- 미세한 턱이나 단차의 경우 마감재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3) 유효폭

- 복도의 최소 유효폭은 1.2m이다.
-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최소폭은 1.5m이다.
- 휠체어가 상호 교행할 수 있는 최소폭은 1.8m이다.
- 복도의 적정 유효폭은 1.8m 이상이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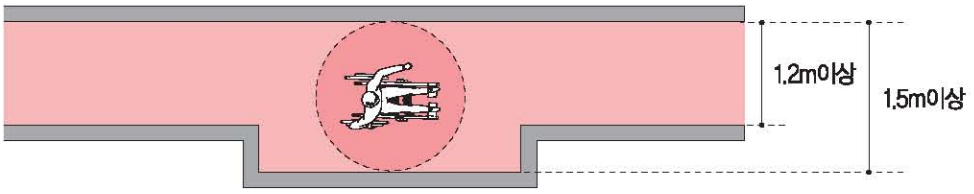

〈회전반경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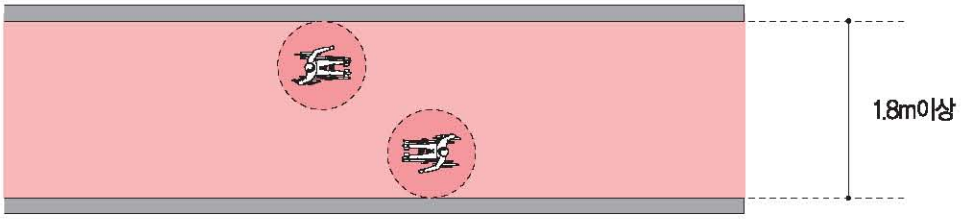

〈적정유효폭〉

4) 복도의 구조

- 유효폭 1.5m 미만의 복도는 길이 25m 이내마다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유효폭 1.5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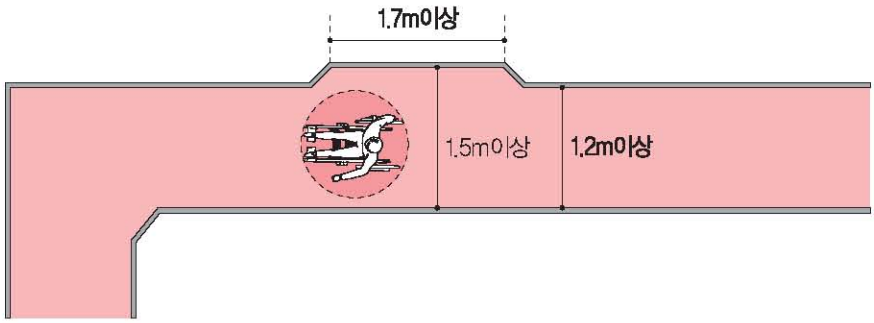

- 유효폭 1.5m 미만의 복도에서는 휠체어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회전부분의 벽 모서리를 0.3m 이상 사선방향으로 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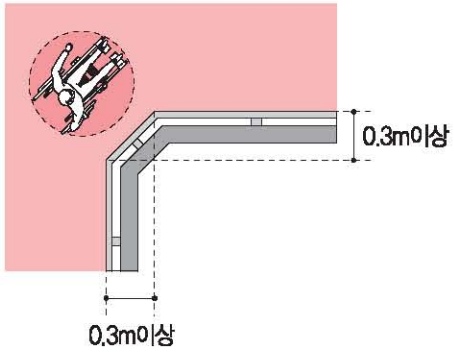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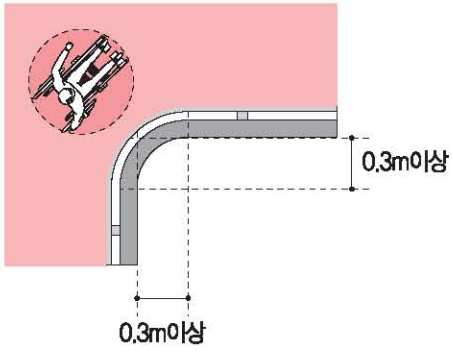

5) 손잡이

- 장애인 전용시설의 복도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한다. 다만, 방화문 등의 설치로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85m±5cm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.85m 내외, 아래쪽 손잡이는 0.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.
- 손잡이 지름은 3.2cm~3.8cm 이내로 하여야 한다.
-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, 벽과 손잡이 간격은 5cm 내외로 한다.
-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실내 복도에 손잡이가 있는 경우, 복도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요 시설물 등의 정보를 점자표지판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.

6) 휠체어 활동공간

- 모든 출입구 앞 복도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최소 1.5m×1.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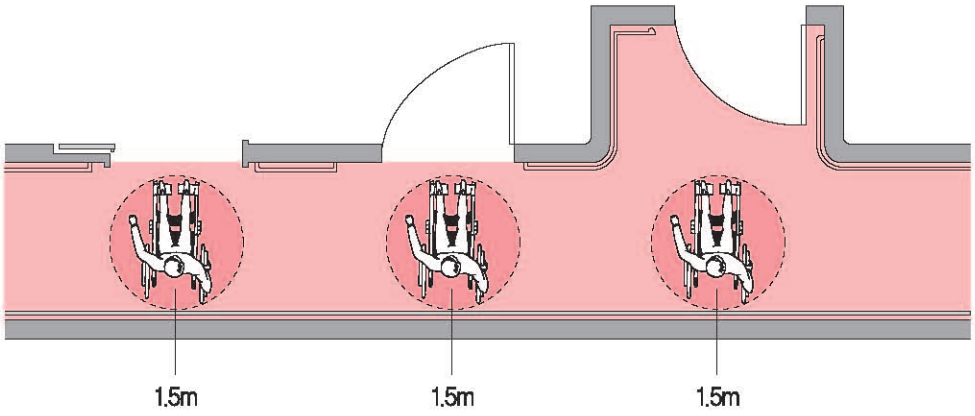

7) 높이 차이

-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는 곳은 유효폭 1.2m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승강기,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8) 출입구의 접촉부분 • 휠체어가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입구 앞에 1.8m 이상의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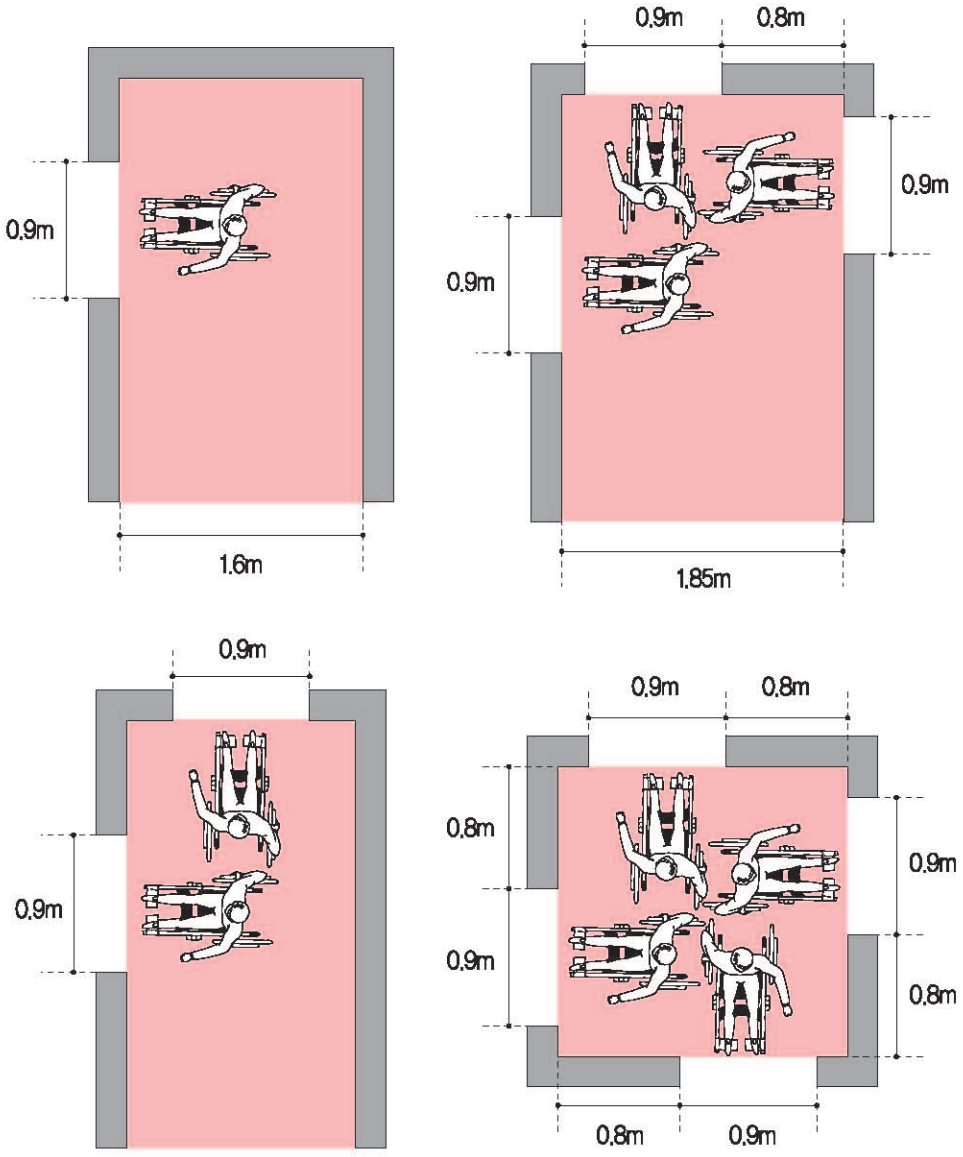

〈접촉부분 활동 공간〉

9) 보행장애물

- 좌우 벽면에 요철 등의 리듬이 규칙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인지하는데 매우 유익하다.
- 벽면에 돌출된 부착물, 의자, 자동판매기 등 유효폭을 침범하는 시설물은 보행에 장애물이 된다.
- 복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.6m~2.1m 범위 내의 벽면 돌출물의 돌출폭은 0.1m 이하여야 한다.
- 독립된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.3m 이하여야 한다.
- 유효폭 이내의 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.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유효높이 2.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.6m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이나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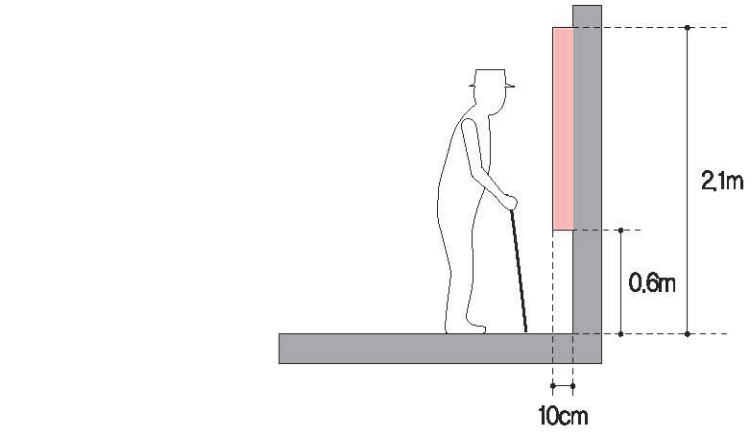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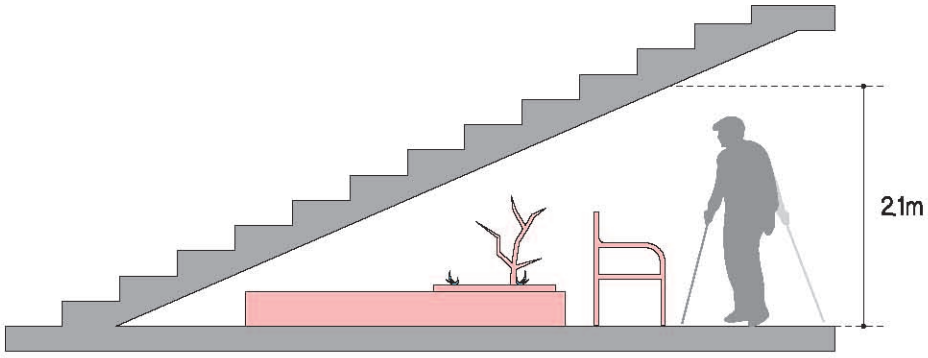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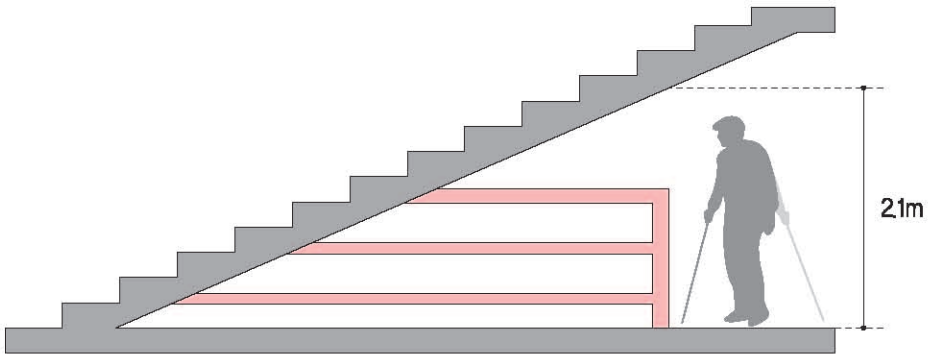

10) 휴게시설

- 의자, 자동판매기, 공중전화 등 모든 휴게시설은 벽면에 매입된 구조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복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1) 시각장애인의 유도

- 시각장애인 유도는 벽면 또는 손잡이(핸드레일)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- 벽면의 요철, 음성 또는 음향신호, 소리, 냄새, 빛 등을 활용하여 유도한다.

12) 안전성 확보

-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.15m~0.35m 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.
-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.